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·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 (안 제77조제4항)

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4항 중 “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”를 “철근콘크리트 등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7조(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 폐시설”이란 <u>창문없이 철근콘 크리트로</u>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 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.	제77조(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철근콘크리트 등으</u> <u>로</u>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955